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1.>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 구역(제16조·제25조 및 제45조 관련)

구분	명칭	관할 구역
지방 국토 관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특별자치도 일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을 포함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일원(도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의 국도 제37호선 전 구간은 제외한다)
지방 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흑산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부산지방항공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흑산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주지방항공청	제주특별자치도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부고속선(서울기점 59.795km~김천구미역 북쪽), 경부선(서정리역~영동역), 호남고속선(오송기점 67.5km 지점까지), 호남선(대전조차장~강경역), 장항선(천안역~대천역 북쪽), 충북선(조치원~주덕역 서쪽), 강경선, 대전선, 오송선, 부강화물선, 서해선(대곡기점 73.8km~홍성역), 평택선